

중국산 수입타일에 대한 무역구제조치가 국내타일시장에 미친 영향

글 _ 이기정 || 대한도자기 타일공업협동조합
koceramic@hanmail.net

1. 도자기질타일 산업 개요

도자기질타일은 건축물의 내·외장용으로 사용되는 마감재로 국내 타일산업은 1960년대에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여 산업활동을 시작한 역사가 비교적 짧은 업종이다. 그러나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전후하여 정부가 추진한 200백만호 주택건설로 공급량이 절대 부족하자 대부분의 업체가 이태리 등 선진국의 최신 자동화 설비를 대거 도입하여 현재는 년간 6천6백만 평방미터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생산량은 2000년 초까지는 세계 10위권이었으나 후개도국들의 대대적인 신증설로 2005년에는 21위로 밀려났다. 그러나 소비는 세계 18위이며 2005년에 1억8천만불이 수입되어 세계 제6위의 수입국이 되었다.

2. 무역구제 신청 동기

1990년대까지는 수급이 균형을 이루어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하여왔으나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급증하면서 국내 업체들의 생산 감소 및 도산을 불러왔다. 그동안 중국산은 품질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 사용을 기피하여 왔으나 폐쇄경제에서 시장 경제로 전환하면서 제품의 품질 향상은 물론 상거래에서도 신뢰가 쌓여 가면서 빠르게 국내시장을 잠식하여갔다. 도자기질타일의 중국산 수입동향을 보면 2000년 6백만불

(116,143톤), 2001년 1천8백만불(256,267톤), 2002년 5천1백만불(506,690톤), 2005년에는 1억6백만불(616,892톤)이 수입되어 불과 6년만에 1,700%의 증가세를 보여 총 수입량의 80%를 점유 하였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국내 타일산업은 3-4년 내에 기반이 붕괴될 위기감이 확산되면서 산업피해구제제도를 통한 무역구제신청을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3. 산업피해구제제도

특정물품의 불공정한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당해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부과 또는 수량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여 공정 경쟁을 확보하는 제도로 1)반덤핑관세제도 2)상계관세제도 3)세이프가드제도 등이 있다. 이 제도는 일방적인 수입규제조치가 아니라 WTO 협정에 의거 국제적으로 인정된 조치이다.¹⁾

상계관세제도는 수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수출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이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었을 때 보조금 범위내에서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보조금에 대한 입증이 어려운데다 덤팡율이 낮게 산정될 수 있어 피해 산업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세이프가드(Safeguard, SG)제도는 수출국의 공정한 수

1) 법적근거 :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 관세법

출행위에 의한 수입이지만 특정물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여 국내 산업이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수입량을 조절하거나 관세율을 인상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WTO협정은 긴급 산업피해구제조치를 발동한 수입국으로 하여금 당해 수출국에 대해 보상을 제공하고, 당해 수출국으로 하여금 수입국의 무역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부에서도 권장을 하지 않는 제도이다.²⁾

4. 구제신청

구제신청에 앞서 덤픽율의 존재여부와 이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사실이 존재하는지 즉 인과관계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었다. 중국 현지에 유통시장 및 제조업체를 방문하여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덤픽율을 산정한 결과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에 불과하지만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구제 신청업체의 자격요건으로는 1)신청업체의 생산비중이 국내 총생산의 25%이상이며 2)구제신청에 동의하는 업체의 생산비중이 50%이상이며 3)신청업체는 조사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으로부터 타일을 수입한 사실이 없고 4)최근 3년간 덤픽수입으로 실질적인 피해가 있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요건 등을 충족시키는 4개사를 선정하여 2005년 4월30일 중국산 수입타일에 대하여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5. 예비긍정판정 및 확정판정

구제신청 후 약 2개월 후인 6월 22일 조사개시 결정이 고시되고 무역위원회 조사관들의 현지 조사가 실시되었다. 중국과 국내 제조업체들을 직접 방문하여 피해 및 덤픽 사설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각종 통계 및 원가분석 등의 자료의 제출 때문에 관련 업체들은 추가적인 업무

2) 중국산 수입마늘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가 이 제도를 적용하여 긴급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 정부에서는 우리나라산 수입전자제품에 대하여 보복조치를 취한바 있다.

로 어려움이 있었으나 국내 타일업체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정임을 인식하고 협조가 잘 이루어져 비교적 순조롭게 조사가 진행 되었다. 2005년 11월 23일에 덤픽 및 산업피해유무 예비긍정판정이 내려지고 같은 해 12월 30일부터 4월간 7.25%내지 37.40%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고 재경부에서 고시하였다. 이후 2006년 3월 20일에 공청회를 거쳐 2006년 4월 17일에 무역위원회에서 중국 공급업체에 대해서 향후 5년간 2.76%-29.41%의 덤픽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재경부에 건의하여 2006년 5월 29일 재경부령으로 고시되었다. 구제신청 일로부터 13개월만의 결과였다.

6. 확정판정에 미치는 요인

예비 판정 시 보다 확정판정에서 덤픽율이 큰 폭으로 낮아져 업계에서는 크게 실망하였으나 중국이라는 강국과의 법적대응에서 승소하였다는 점과 기타 업체 평균 덤픽관세부과율이 13.33%로 여기에 기본관세 8.0%를 더하면 21.33%의 비교적 높은 관세를 수입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성공적인 결과로 본다. 조사 과정에서 소송비용 부담 때문에 중국측에서 이의신청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타 품목에 비해 월등히 많은 12개사가 이의신청을 하여 이에 대응하느라 업계뿐만 아니라 대리인도 곤욕을 치루었다.

제소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덤픽관세부과업체에 Foshan Xinzongwei라는 무역회사를 포함시키고 이 회사를 통하여 수출을 대행하는 생산자 명단 80개사를 재경부에 제출한 것이다. 덤픽관세부과는 제조회사에 부과하는 것이 국제 관례임을 들어 이의를 제기하여 결국에는 10개사만 포함시키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두 번째는 재경부가 무역위원회에서 건의한 덤픽율을 다시 하향 조정하라고 요청한 것이었다. 기타업체 평균 관세율이 재경부 주장대로라면 13.33%에서 7%선으로 떨어져 덤픽관세부과 효과가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무역위원회의 (안)대로 고시가 되었으나 정부측에서도 WTO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야기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지로 보일 수 있으나 국내



제조업체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고비였다.

그 밖에도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가격약속을 제기한 업체들 때문에 고시가 지연되기도 하였다. WTO반덤핑협정에서는 반덤핑 조치로 덤픽방지관세의 부과방법과 가격약속 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를 업체는 잠정조치 전에 가격약속을 제의해야 함에도 실기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자 확정판정이후에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계류 중이다.

7. 덤픽관세부과후의 시장동향

구제신청 후 확정판결 시까지 중국산 수입타일은 급격한 감소를 나타냈다. 2006년 5월 이전에는 확정판정이 결정되기 전으로 덤픽율이 높게 부과될 것을 우려한 수입업체들이 수입을 기피하여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1월에는 중국산의 수입이 12,020톤, 2월 7,675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35%, -54.91%로 최근 5년 아래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금년도 9월말 현재 금액은 US\$75,1785천불로 전년동기누계대비 2.49%의 소폭 증가를 나타냈으나 중량은 -5.3%가 감소한 75,178톤이다. 그러나 8월과 9월에는 금액 수량 모두 다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Fig.1, Fig.2 참조)

덤픽관세부과 이후에도 중국산 타일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지 않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제조당시 환율이 1,150원선이었으나 금년 9월 현재 950원선으로 하락하여 약 17.4%의 하락폭만큼 수입품이 가격 경쟁력을 갖

중국산 타일 월별 수입액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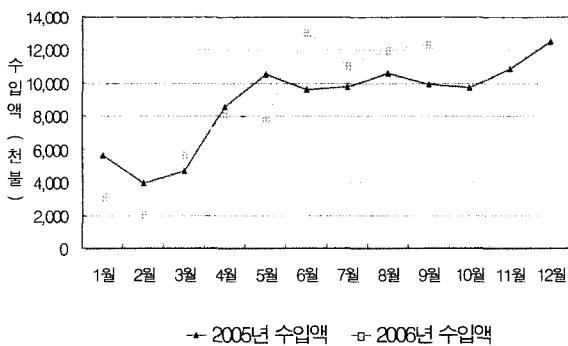


Fig. 1. 중국산 타일 월별 수입액 동향

중국산 타일 월별 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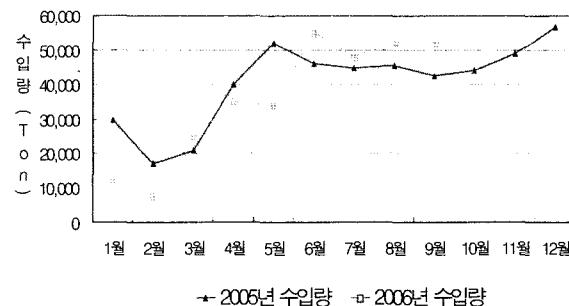


Fig. 2. 중국산 타일 월별 수입량 동향

게 된데 기인한다. 다음으로는 낮은 덤픽방지관세율이 부과된 회사를 명의로의 우회수입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외에도 그동안 사용을 기피하던 1군 건설사에서도 점차 중국산 사용량이 크게 증가한데도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

수입품의 전체적 동향은 저가품의 수입이 둔화되고 이태리, 스페인 등 선진국의 고급제품의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환율이 1,000원선으로 유지된다면 중국산의 수입은 현재보다 50%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5년간 덤픽관세가 부과되는 기회를 잘 살려 국내 업계가 제도약의 기회로 활용하면 타일산업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참고문헌

1. 이상윤, WTO협정 및 우리나라의 긴급산업피해구제 제도, 무역위원회.
2. 한국의 무역구제제도, 2002, 무역위원회.
3. [Http://www.koceramics.com](http://www.koceramics.com)
4. Ceramic World Review, July/September 2006.

● 이기정



- 연세대학교행정대학원 (석사)
- (현)대한도자기타일공업협동조합 전무이사